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경상북도에서는 '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읍자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 하였음.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기 금 명 :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 주관기관 : 경상북도

(3)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출연금액 : 금228,000천원

(5) 조성목표 : ('93~'17년)2,000억원→('27년까지)3,000억원

(6)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

※ 출연근거 :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나.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 법인, 농어업 관련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2) 지원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물식품산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농수산물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물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100%
 -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4) 사업추진절차

- '22. 9월 : 사업지원계획 시달(도)
- '22. 9~10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23.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사업자⇒시)
- '23. 1~12월 : 사업완료확인서 발급(시)
- '23. 1~12월 : 융자실행(금융기관)

다.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

(1) 구미시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계	'93~'21년 출연실적	'22년 출연액	'23년 출연계획	비고
구미시	6,708	6,252	228	228	

(2) 경상북도 출연현황 및 조성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년까지	'22년	'23년
재 원 별	계	266,616	252,418	6,198	8,000
	도	58,393	55,893	0	2,500
	시·군	112,200	103,200	4,500	4,500
	금융기관	23,792	21,814	978	1,000
	수출기금	9,131	9,131	0	0
	운영수익	63,100	62,380	720	0

(3) 연도별 지원실적(구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6-'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농가수(호)	290	185	9	7	12	17	13	11	8	7	21
융자금액	30,546	16,239	1,390	795	1,980	2,014	2,124	1,720	790	643	2,851

라. 출연의 필요성

(1)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

(2)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 합 의 : 해당사항없음

5. 검토의견

○ 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은,

-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3년부터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7.14, 시·군 농정과장 회의)에 따른 출연으로,
- 199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0농가에 30,54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시설 현대화 및 청년농 육성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출된 출연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